

2026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 창업휴학

-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창업휴학기간은 일반휴학에 산입하지 않음)

□ 자격요건

- 1)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교과목이란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

- 2)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
창업기준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혹은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3)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 관련분야로 한정
단,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유의사항 2번 "허용 제외 대상 업종"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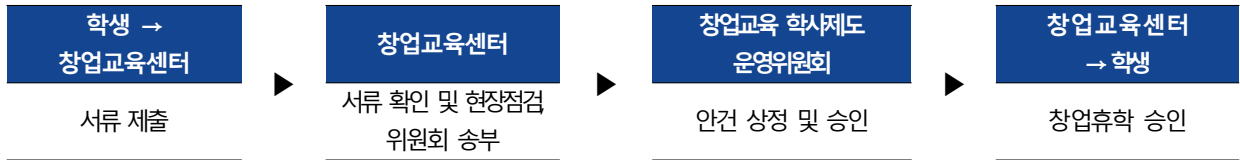
□ 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2026.07.06.(월) ~ 08.07(금)**
※ 위원회 승인 절차로 인해 일반 휴학과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 2) 신청방법: 안내문의 서류 일체 구비하여 **창업교육센터 메일(startup_edu@ajou.ac.kr)**로 제출
창업휴학 연장 또한 본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연장 가능(**자동 연장 불가**)

- ① 창업휴학원(붙임1) ② 창업계획서(붙임2) ③ 사업계획서(자유양식)
- ④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개인사업자 예외)
- ⑤ 창업 과목 이수내역(캡처본) ※미이수시, 이수서약서(붙임3) 작성
- ⑥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요구될 수 있음)

- ※ 정량적인 창업휴학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사업체가 존재하거나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창업휴학 거부 가능

□ 창업휴학 승인절차



※ 창업휴학한 학생은 학교가 요청할 경우,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매학기 창업교육학사제도 위원회 개최됨으로 인해, **학기별로 1학기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서명란에 **본인 및 학과장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2)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음.
(단, 제외 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정 가능)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금융 및 부동산	K64~66
부동산업	L68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무도장 운영업	912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3) 창업휴학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므로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아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031-219-3658 / startup_edu@ajou.ac.kr